

■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[별표 2의1] <개정 2026. 6. 5.>

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

과명	분장사무
총무과	1. 서무, 인사, 문서, 연금, 통계, 표창 및 회계에 관한 사항과 관인의 관수 2. 청사의 유지, 관리 및 기숙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. 도서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4.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연수과	1. 법관 연수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. 법관 연수결과의 분석, 평가에 관한 사항 3. 법관 연수교재 및 자료의 수집, 작성, 편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4. 신입법관연수의 평가시험 및 성적의 관리에 관한 사항 5. 사법연수생 수습(위탁교육 포함, 이하 같다)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6. 사법연수생 수습결과의 분석, 평가에 관한 사항 7. 사법연수생 수습 교재 및 자료의 수집, 작성, 편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8. 사법연수생 수습의 평가시험 및 성적의 관리에 관한 사항 9. 재판연구원(후보자), 사법보좌관(후보자) 등 기타 재판 관련 전문가 연수에 관한 사항 10. 법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한 법실무교육 등 각종 연수 및 교육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11. 외국법관 등에 대한 연수 및 국제사법교류·협력에 관한 사항 12. 청소년, 교사 등 일반 국민들에 대한 법교육에 관한 사항 13. 법원실무제요, 재판실무편람, 기본법률총서, 심화연구총서 등을 비롯한 교재 및 실무 지침서 제작·발간에 관한 사항 14. 법정언행컨설팅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15. 법관연수 이러닝센터 개설·운영에 관한 사항